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인도네시아: 영토·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영공 및 인도네시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제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5

제7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제7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자

제8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
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
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아
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를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로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사본. 다만,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의3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⑯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
호의5 및 제24호의 6(을지)서식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
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
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7조제11항 중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을 “다음 각 호”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제24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네시아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

가 정보,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제3.21조 및 중국과의”를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를”을 “관세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국·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한다.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도네시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추가 정보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회신 받은 후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이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해로 그 결과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2.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그 결과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3, 별지 제24호의4, 별지 제24호의5 및 제24호의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 및 별지 제24호의4 서식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제7조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15조제19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0조제3항제9호, 제30조제4항, 제30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별표 15의5,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5 및 별지 제24호의6 서식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통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채약상대국의 관
 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3]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19항제2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²⁾) (location & postal code³⁾) preferential origin.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습니다. 2) 원산지 국가(한국 또는 이스라엘)를 적습니다.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를 적습니다.
국문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²⁾(장소 및 우편번호³⁾) 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19항제3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국문본	이 서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상품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신고한다.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 거.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u>인도네시아: 영토·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영공 및 인도네시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u> 더. <u>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u>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

<신 설>	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 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 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 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별표 15의5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 급한 것
<신 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 급한 것 ②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③ ~ ⑤ (생 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② (생 략)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 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 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 통상부 2. ~ 11.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설>	작성·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 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재정 경제부 2. ~ 11.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 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 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
---	--

<신 설>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	<u>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u> 다만, <u>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u> ⑩ <u>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u> 2. <u>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u> 다만, <u>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u>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야 한다. 1. (생략)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u>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u> 나.·다. (생략) ⑩ (생략) ⑪ <u>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u>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⑮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가. <u>원산지증명서 사본. 다만,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u> 나.·다.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 <u>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u>-----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⑮ (현행과 같음)
--	---	--	---	---

<신 설>

<신 설>

⑮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⑯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 및 제24호의6(을지)서식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⑩ (생 략)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 ⑮ (생 략)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다음
----- 각 호-----

-----.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네시아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중국과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 ----- ----- ----- -----. ----- ----- ----- 제3.21조, 중국과의 협
--	---	--	--

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

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물품 등) ①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 8. (생략)

<신설>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생략)

제9호

1. 관세를 면제

2. ~ 8. (현행과 같음)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⑤ (현행과 같음)

재해로 그 결과의 회신이 지연
된 경우

2.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
이 진행 중인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관세
청장 또는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그 결과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